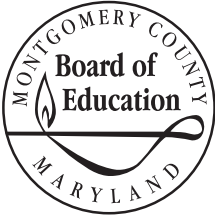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직 원을 위한 행동 규범





비전

우리는 각 학생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사명

모든 학생이 학습 및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과 대학 및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기량을 갖도록 합니다.

핵심 목적

장래에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준비시킵니다.

핵심가치

학습
관계
존중
우수함
공평

교육위원회

Mr. Michael A. Durso
의장

Dr. Judith R. Docca
부의장

Mr. Christopher S. Barclay

Mr. Philip Kauffman

Mrs. Patricia B. O'Neill

Ms. Jill Ortman-Fouse

Mrs. Rebecca Smondrowski

Mr. Eric Guerci
학생의원

학교 행정

Jack R. Smith, Ph.D.
교육감
Superintendent of Schools

Maria V. Navarro, Ed.D.
학업 관련 책임관
Chief Academic Officer

Kimberly A. Statham, Ph.D.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Andrew M. Zuckerman, Ed.D.
행정 책임관
Chief Operating Officer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www.montgomeryschoolsmd.org



동료 여러분께,

우리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중시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졸업후 성공을 돕기위해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직원 행동 규범은 MCPS가 교직원에게 모든 학생과 동료직원, 광범위하게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 일하여 나아갈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행동 규범은 2015-2016년도에 새롭게 개발한 주도안입니다. 직원교육과 지난 학사연도의 적용/이행 과정을 관찰하여 이 서류에 도입부를 추가하였습니다. 교직원들 사이에 교직원 행동 규범이 직장에서 유익한 자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2016-2017학사연도판에 여러 부분을 갱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MCPS가 적용한 두 가지 새 규정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MCPS Regulation ACH-RA, 직장에서의 불링/왕따(Workplace Bullying)가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ACH, 직장에서의 불링/왕따(Workplace Bullying)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직원은 자신이 이 규정에 명시된 모든 형사 상의 체포, 구형을 받은 경우, 자진 보고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MCPS Regulation GCC-RA, 교직원의 형사상의 체포, 구형, 유죄 자진보고(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입니다. 이 규정은 MCPS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교직원을 위한 행동 지침은 교육구의 미션을 교직원들이 MCPS에 그리고 넓게는 지역 사회 전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지침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직원 행동 규범은 또한, 추가로 직원이 MCPS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징계 절차에 대한 요약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교직원 노조, 직원, 이익 관계자와 함께 이 책자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직장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육성하며 교육구가 교직원에게 대해 갖고 있는 높은 기대치를 명시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CPS 학생과 MCPS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된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진심을 담아서,

Jack R. Smith, Ph.D.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서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우리 기관의 문화가 우리 교육구의 주요 가치관인 학습, 관계, 존중, 우수, 평등 문화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하고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은 모든 학생, 학부모/후견인, 각 수준의 동료 및 지역 공동체와 정직하고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교직원을 위한 행동지침은 우리가 교육구의 중요한 미션을 실행할 때 MCPS와 지역사회 전체가 직원들에 대해 기대하는 적절한 기대치와 행동기준의 일반적 개요를 제공해줍니다. 추가로 이 행동 규범은 직원이 기대치나 행동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MCPS가 적용하게 될 징계절차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동 규범은 자격소유자, 비소유자, 임시교사, 임시로 고용된 직원, 절기에 따라 고용되는 직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고용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MCPS 교직원 및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행동 규범의 많은 부분은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및 다른 가이드라인(이후, MCPS 규칙으로 명시)과 협상된 합의사항, 메릴랜드 주와 연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규범은 다른 자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각 사항을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요약 작성된 것입니다. 이 행동 규범은 계약이 아니므로 참조되는 규정 및 법적 요건은 언제든지 바뀌어 이 책자의 해당하는 내용과 참고 문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¹

기대 및 요구되는 직원행동

MCPS는 모든 교직원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 일하고, 높은 기준의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유지하며, 모든 적절한 법, 정책, 규정에 따르기를 기대하고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직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나 행동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도덕, 사무실에서의 위법(이에는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아동방치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것도 포함), 반항행위/불복종, 무능력, 고의적인 의무태만.

직원이 자신의 행동에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MCPS는 법, 정책, 규정 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전문가의 행동 기준에 따라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 학생과 동료 직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직원의 전문적 청렴, 정직함에 반하는 행위
- 배당된 의무를 실행할 수 없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

다음의 도표는 MCPS가 모든 직원에게 요구/기대하는 행동 기준의 특정 예입니다. 이 예는 교정이나 처벌을 야기하는 부적절하고 방해가 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다음 페이지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Do nots"를 포함)를 한 직원뿐만 아니라 요구되어지는 행위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은 정직 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책자에 모든 부적절, 부적당, 비도덕적 행위가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음 페이지의 예는 실제에 관한 예와 설명이며 모든 것을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도 징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실에 기반을 둔 일반상식이나 일반적인 이해에 기준하는 직원 행동 기준은 도표에 나열하지 않았습니니다.

1. 업무환경에서의 윤리적 행동

직원은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MCPS 내의 규칙, 도덕/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모든 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업무 밖의 법과 MCPS 규칙도 따라야 합니다.

기대/요구되는 행동의 예:

- 직원의 업무 수행은 적절하고 만족할만하며 시기적절해야 하고 MCPS 부서나 학교의 절차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감독자나 관리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해야 합니다.
- 스케줄대로 정시간 출퇴근하며 근무시간 동안은 MCPS에서의 책임업무를 충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 적절한 전문적인 복장으로 출근합니다.
- 도덕/윤리적 행위는 법적 요건, MCPS 규칙에 따르며 이해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²
- 교직원과 학생의 기록을 포함한 일에 관련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합니다.³
- MCPS의 일로 비용이 생길 경우와 MCPS의 여행이나 MCSP 업무에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여 상환신청을 해야 할 경우, 의무와 올바른 사리분별을 하여 신청을 합니다.⁴
- 모든 요구된 보고를 적시에 프로그램과 재정보고 지침에 따라 완수합니다.
- 요구되는 모든 MCPS의 전문성 교육에 참석하고, 자신의 MCPS 직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효한 증명서/면허/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목과 훈련을 이수합니다.
- 전문성 성장 시스템(Professional Growth System)의 적절한 기준을 읽고 따릅니다.
- 사기, 거짓된 청구, 거짓 진술, 뇌물, 절도, MCPS 자금 또는 소유물의 횡령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보고를 합니다.
- MCPS 자금의 예산을 책임 있고 적절하게 운영하며, MCPS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타인의 소유물을 아깁니다.
- 법 규정과 MCPS의 규율에 따라,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및 약물⁶을 금지합니다.⁷
- 학교의 안전과 보안에 관해서 법 규정과 MCPS 규율에 따릅니다.

- MCPS 웹사이트, 이메일, 다른 SNS/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⁸와 시험 보안과 데이터 보고에의 요건⁹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법 규정과 MCPS 규율에 따릅니다.
- 형사상의 체포, 구형, 유죄를 스스로 보고합니다.¹⁰
- MCPS Regulation KEA-RA: Participation in Political Campaigns and Distribution of Political Materials(정치 운동의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 배포)
- MCPS, 법시행기관, 조사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 MCPS 기준과 적절한 인가 안에서 학생의 여행을 주관합니다.
- SNS/소셜미디어의 활동을 포함한 개인 삶의 활동을 할 때, MCPS 자신의 행동이 직원으로 풍기 문란하지 않도록 하며, MCPS¹³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주는 범죄, 부정적 및 다른 부적절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부적절한 행위의 예:**
- 학생과 동료 직원, 학부모/후견인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연관되면 안 됩니다.
- 자신의 업무를 마음대로 떠나거나 휴가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력서나 지원서에서 이력이나 내용을 빠지 않습니다.
- 가불 경비정산, 지출, 급료 등을 요청을 제출할 때,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MCPS에 또는 MCPS에 대해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훔치지 않습니다.
- MCPS 업무 중 개인적 관심 분야나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가능성 여부의 의심이 있을 경우 관련된 부분의 결정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친척, 인척, 개인적 관계가 있는 직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MCPS 정책과 규정¹⁵이 허락하는 선물 외의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 MCPS 정책과 규정¹⁶에서 정한 이외의 개인교습, 학교 시작 전, 방과 후, 여름 활동을 보수를 받고 해서는 안 됩니다.
- 화기나 다른 총기를 MCPS 소유지나 MCPS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소유하지 않습니다.

2. 학생과의 도덕/윤리적 행동

모든 직원은 전문성의 기준에 따라, 학생의 교습을 돕기 위해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구/기대되는 행동의 예:

- 모든 학생을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적체, 나이,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경향, 신체적 특징 또는 장애 및 법¹⁸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어떤 특징에 대해 공평하고 평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 모든 학생에 대해 합당하고 명확하며 나이에 맞는 높은 기대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긍정적인 행동 조정전략을 사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 학생의 개인공간을 존중합니다.
-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의 학대 또는 방치를 보았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 또는 방치 신고를 방해하지 않습니다.¹⁹
- 학생과 교습이나 직원의 직업 의무에 관련 없는 주제로 소셜 미디어, 이메일, 다른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대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의 예:

- 학생을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나이,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경향, 신체적 특징 또는 장애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어떤 특징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²⁰
- 학생을 불링/왕따, 괴롭히기,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 성인이나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착취나 남용 또는 학대를 위해 또는, 아동의 믿음을 사기 위해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구애 행동²²을 포함한 아동이나 성인 취약자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¹⁹
-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연애 또는 성적 관계로 MCPS 학생과 연관 또는 연관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문을 잠그거나 불을 끄고, 교실에서 일대일로 학생을 만나면 안 됩니다.
- MCPS 학생에게 포르노를 보이거나 포르노에 아동을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 MCPS 소유지에서나 MCPS에 관련된 활동 중, 포르노를 알려주거나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학생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때리기, 간지럽히기, 뽀뽀/키스하기.
- 학생의 신체의 일부를 쓰다듬거나 어루만지기.
 - 학생에 의한, 학생에의 모든 형태로의 메시지 보내기.
 - 무례하거나 성적인 그림, 사진, 메모, 만화, 조크를 보내기.
 - 메모: 메모: 예를 들어 등이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악수, 하이파이브, 어린 학생을 인도하기 위해 손을 잡는 것 등 특정 상황에서의 접촉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부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 조롱하거나 비속어의 사용.
 - 개인 삶의 사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토론.
 - 다른 성인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학생을 장려하기.
 - 성적 또는 불쾌하거나 무례한 유머.
 - 학생의 체형이나 자세, 신체발달, 복장,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한 학생에 대해 수치심, 치욕, 경멸적으로 말하기.
 - 학생에게 헐박, 비하,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거친 언어.
- MCPS 학생과 교습이나 직원의 직업 의무에 관련 없는 주제로 소셜 미디어, 이메일, 다른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대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이메일 계좌,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사이트(SNS) 또는 다른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친구 맺기"를 하지 않습니다.
- 학생과 자신의 차로 부모/후견인, 학교 교장/행정단 허락 없이 이동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성인(제2의 인물)을 학생과 함께 타도록 합니다.
- 교장/행정단이 사전에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개인에게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신체적 체벌이나 흔들기, 밀기, 꼬집기, 고립시키기 같은 체벌, 음식, 조명, 의학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학생 훈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²³
- MCPS의 규정과 교육구 주관 훈련과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경우에도 신체적인 제지나 고립을 시키면 안 됩니다.²⁴

3. 동료, 학부모/후견인, 지역사회에서의 도덕/윤리적 행동

모든 직원은 학부모/후견인, 다른 직원, 지역사회원을 직업 정신을 갖고 존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차별에 대한 모든 금지법과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이 타인의 관심, 관점, 문화,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용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기대되는 행동의 예:

- 모든 대화와 상호소통에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학부모/후견인을 환영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합니다.²⁵
- 열린 대화를 하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 입장을 고수하거나, 적대적 접근보다 협력적, 관심사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 건설적이고 정중하고 존중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받습니다.
- MCPS 소유지예의 방문자, 자원봉사자, 계약자에게 적절한 감독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 다른 직원, 학부모/후견인, 학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의 예:

- 타인에게 무례 또는 실례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모든 학부모/후견인, 동료, 감독자/관리자 또는 다른 시민을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나이, 결혼 여부,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경향, 신체적 특징 또는 장애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어떤 특징으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²⁷
- MCPS 직원이나 다른 성인을 불링/왕따, 괴롭히기,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떠한 행동이나 실제 또는 알게 된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보고한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행동 규범의 적용과 시행

이 행동 규범은 MCPS 직원의 행동에 대한 기대가 표현된 다양한 법적, 법 이외의 요건 및 시스템 위에 추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는 다음사항(기제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와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는 교사, 학교장, 교감,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가 승인한 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한 직책인 공교육 교직원 행동에 대해 바라는 바를 정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기준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학교 버스 운전사와 버스 승차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 법은 해당 직원의 운전과 고용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³⁰
- 2. 기타 연방 주 법(Other federal and state laws)**은 다른 사람, 소유지, 평판을 보충하기 위해 MCPS 직원이 지켜야 하는 요건, 재정과 프로그램의 책임, 아동학대와 방치의 신고, 학생과 개인 기록의 비밀유지, 시민의 권리와 차별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MCPS 직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설립해줍니다.
- 3. 집단 협상된 협정(Negotiate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교육구조체인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 (MCEA),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Local 500 (SEIU), Montgomery County Association of Administrators and Principals/Business and Operations Administrators(MCAAP/MCBOA)와의 집단 협상된 협정은 직원의 업무, 직원의 적법절차의 권리, MCPS가 "적절한 사유"로 직원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조항³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직원이 행동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적절한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문화존중(Culture of Respect):** MCPS, MCEA, MCAAP, SEIU 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존중은 MCPS 교직원들에게 직원이 모두 성공하고, 높은 학생 성취도와, 스스로 갱신되는 기관으로의 성과를 위한 긍정적인 업무환경을 향상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³²
- 5. 전문성 양육 시스템(Professional Growth Systems):** MCPS는 모든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 양육 시스템은 업무 기준에의 구체적인 기대치와 이에 맞는 행동과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양육 시스템은 또한 기대하는 바에 대한 규정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평가 구조와 시스템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³⁰ 전문성 양육 시스템(Professional Growth Systems)은 또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평가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³³

6.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은 윤리, 재정관리, 아동학대와 방치, 차별금지과 교직원의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직원 핸드북, Just Cause Standards for Bus Attendants and Bus Operators³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 MCPS 교직원의 의무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준과 표준에 자신의 행동을 적용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Professional Growth System의 향상과정 사용, 집단 협상 협약하의 교직원의 예비 징계, 또는 자격증 직원의 경우, Section 6-202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 명시된 정직과 해고절차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는 한 가지 이상의 접근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MCPS에의해 각 케이스에 따라 주도 및 결정하며 법과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단체협상 협의에 따라 불만과 항소과정이 검토 및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규범은 교직원의 징계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Professional Growth System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거나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 및 점진적 징계

MCPS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직원 예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일관되고 공정하며 평등한 훈육 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무차별 교정 행위** 어떠한 경우, 감독자/관리자나 매니저는 직원의 징계처분이 요하지 않습니다만 선후 행동의 기준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감독자/관리자나 매니저는 앞으로 바라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류는 사실상 징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만, 비밀기록파일에 보관됩니다. 만약 직원의 행동이 교정행위 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징계에 배경설명이 되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2. **징계 조치.** 전형적인 징계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구도 또는 서면으로의 경고

- 서면으로의 질책
- 급료없는 정직
- 강등
- 직책에서의 면직
- 해고

MCPS는 어떠한 수준의 점진적 징계를 사용하거나 위의 행동을 차레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상황의 특정 사실이 어느 징계가 적절한지를 결정해 줍니다. 각 상황에서의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완화하게 하는 고려 요소(예를 들어 직원의 긴 기간 동안의 좋은 업무실적과 기록 또는 직원부분에 과실이 적을 경우) 또는 악화 요소 (예를 들어 타인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상황에 둔 것, 의도적으로 업무를 잘못된 것 또는 행동의 효과 또는 다른 사람의 결과와 다를 경우)가 고려대상이 됩니다. 행동 규범 또는 적절한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인식하지 않거나 지식이 없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변명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명시한 금지된 범죄행위를 포함한 심각한 위반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는 직원이 행해야 하는 바를 알고 다시는 부적절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주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가벼운 징계 수준이 적용된 후에도 행동이 나아지거나 징계가 효과를 거두지 못 할 경우인 더 심각한 수준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위법의 경우, 첫 번째 위반 또는 되풀이되는 위법의 경우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정지 또는 해고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이 서면으로 특별히 열거하지 않았으나 원칙이나 범죄법의 상식적인 적용에 해당되는 행동기준을 어긴 행위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의심되는 아동학대와 다른 범죄행위에 관여된 경우의 절차 과정** MCPS 직원이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아동방치에 연관되었을 경우는 즉시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알려진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 구두신고를 해야 하며 성적 학대의 경우, 메릴랜드 주 법과 교육위원회 Policy JHC, MCPS Regulation JHC-RA에 정해진 대로 Division of the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 (MCPD)의 Special Victims Investigations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MCPS

교직원에 의한 아동 학대 및/또는 아동 방치에 대한 모든 케이스에서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OHRD)는 모든 해당되는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내부조사를 진행합니다. CPS와 MCPD가 차단하거나 주 검사실에서 형사사건으로 케이스를 종결했을 경우 및/또는 Montgomery 카운티 주 검사실에서 범죄협의를 종료시켰을 경우에도 OHRD는 계속 내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계약 또는 행동지침 위반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PS, MCPD와 다른 외부 기관에서의 모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조사가 계류되며 MCPS는 증인, 의심되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기관과의 사전 동의 또는 어떠한 권장사항일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MCPS는 모든 내부 조사를 조사하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실행해야 하며 외부조사를 방해 또는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되는 범죄활동에 관련된 다른 범죄행위, 예를 들어 MCPS 소유지에서의 마약배포 또는 무기류의 사용은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MCPD,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과 학교에서의 사건에 대한 다른 법 행정 기관에의 대응(Other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School-Based Incidents)³⁶의 상호체결에 따라 MCPD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범죄활동이 있을 경우, OHRD는 조사하는 외부기관 조사를 방해 또는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함께 공조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른 의심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우의 절차 과정 다른 불법행위의 경우, 법과 규정의 일관된 적용에 따라, 매니저와 감독자/관리자의 OHRD에의 보고는, 지도자로서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장소에서 감독자와 행정담당자가 조사를 하거나 또는 조사하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수퍼바이저는 고용인이 프로페셔널 또는 행정가 또는 수퍼바이저(주로 department 디렉터)의 경우, 고용인이 서포팅 서비스 고용인의 경우, 교직원의 행동이 직접적 관리자보다 높은 직위의 교육구 담당자의 질책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무급 정직 또는 해고를 OHRD 자신의 associate superintendent 를 통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 OHRD는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제공한 정보가 타당할 경우, 행동을 취하거나 추천을 합니다. 만약, 매니저, 감독자/관리자가 Professional Growth System

또는 직원의 행동절차에 명시한 직원의 행동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매니저, 감독자/관리자는 OHRD의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liance Unit(PECU)에 연락해야 합니다. 직원의 불만족한 일상 업무에 관련된 경우는 전문가 성장 시스템(Professional Growth System)을 통해 언급되게 되며 만족할 업무능력을 이루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직원해고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Professional Growth System이나 징계절차를 통해 명시될 수 있으며 MCPS는 한 과정씩 절차과정을 이루어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 직원 협상 기관의 회원인 직원은 조사기간동안 각 단체 협상 협약의 조항에 따라 자신의 노조/유니언이 진술하도록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 또는 감독자/관리자가 대표자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PECU 또는 Department of Association Relations for assistance and guidance로 연락해야 합니다.

4. **행정적 권고사직.** 직원의 의심되는 부적절한 어떠한 행위는 혐의 조사를 계류하게 하는 행정권고사직을 권고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개인별로 검토하게 되며, 조사할 때 중요한 점은 직원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학생이나 직원을 위협 또는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장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 영구적인 주장하는 부적절한 행위 여부입니다. (예: 혐의가 만약 재정적 불법행위와 MCPS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MCPS Regulation JHC-RA에 따라, 아동학대 또는 방치 혐의가 있는 MCPS 직원은 신빙성 있는 정보로 인한 다른 결과의 결정이 없는 이상 행정권고 해직을 받게 됩니다. 직원이 행정권고로 사직할 경우, 과정은 MCPS 이메일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의 접속을 제한하게 됩니다.

금지된 범죄행위

추가로 MCPS 징계 과정에 직원은 특정 위법행위로 범죄 기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행위는 MCPS에서 직원의 계속적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ction 6-113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 따라 MCPS는 성범죄나 아동성학대, 폭력범죄로 유죄가 결정되거나 유죄를 인정 또는 불항쟁 답변의 경우, 이를 알고 고용 또는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³⁷ 추가로, Maryland State Superintendent of Schools는 범죄와 다른 부정행위에 연루된 특정 상황에 연루된 경우, 주에서 발급한 교사 자격증이나 다른 전문 자격증을 박탈 또는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³⁸

MCPS는 또한, 모든 교직원이 만약, MCPS Regulation GCC-RA, 교직원의 형사상의 체포, 구형, 유죄 자진 보고(*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에 명시된 위반으로 형사상의 체포, 구형을 받은 경우, 또한, 범죄 소송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직원의 자진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구는 Section 6-113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 명시된 관할 교육구에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앞으로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범죄행위의 조치를 포함한 형사상의 체포, 구형에 적용됩니다.

질문과 이후 안내

MCPS 직원이 직원 행동 규범의 의미 또는 해석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또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을 경우, 학교장이나 감독자/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장 또는 감독자/관리자가 질문이 있을 경우는, 인사과(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liance Unit Mr. Robert B. Grundy, director(301-279-3361) 또는 Department of Association Relations의 Mr. Stanislaw (Stan) S. Damas, director(301-279-351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직원은 각자의 노조/유니언이나 협회 직원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받도록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말미의 주

- 1 추가 정보는 MCPS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CPS 행동 규범은 MCPS 학생 행동 규범과는 다른 것입니다.
- 2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BBB, 윤리/도덕(*Ethics*)과 MCPS Regulation GCA-RA, 직원의 이해관계 상충(*Employee Conflict of Interest*)을 봅시다.
- 3 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JOA-RA, 학생기록(*Student Records*)을 봅시다.
- 4 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DIE-RA, MCPS 목적에 따른 여행(*Travel for MCPS Purposes*)를 봅시다.
- 5 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GCB-RA, MCPS 직원, 기관, 계약자의 사기행위의 신고와 처리(*Reporting and Handling Fraudulent Actions by MCPS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를 봅시다. MCPS는 좋은 의도로 한 신고에 보복이나 앙갚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하여 교직원이 안심하고 사기, 낭비, 악용을 익명으로 보고 및 신고하는 핫라인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익명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염려되는 점을 학교나 부서의 수퍼바이저나 다른 지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봅시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services/
- 6 자세한 안내는 Board Policy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과 MCPS Regulation COF-RA, MCPS 소유지에서의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조항(*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을 봅시다.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MCPS 소유지에서의 모든 알코올 사용을 금지합니다.
- 7 MCPS 소유지란 MCPS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모든 땅과 버스와 MCPS 자동차, 학생이 참여하는 MCPS의 모든 시설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교육구 그리고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 8 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IGT-RA,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 보안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Security*)를 봅시다.
- 9 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ILA-RA 보안평가와 보고 요건(*Assessments with Security and Reporting Requirements*)을 봅시다.
- 10 MCPS는 모든 교직원이 만약, MCPS Regulation GCC-RA, 교직원의 형사상의 체포, 구형, 유죄 자진보고(*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에 명시된 위반으로 형사상의 체포, 구형을 받은 경우, 또한, 범죄 소송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직원의 자진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앞으로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범죄 행위의 조치를 포함한 형사상의 체포, 구형에 적용됩니다.
- 11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KEA, 정치적 캠페인과 유인물(*Political Campaigns and Political Materials*)과 MCPS Regulation KEA-RA, 정치적 캠페인에의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Participation in Political Campaigns and Distribution of Campaign Materials*)을 봅시다.
- 12 자세한 안내는 Regulation IPD-RA, 여행학습 프로그램, 현장학습과 학생기관의 여행(*Travel-Study Programs, Field Trips and Student Organization Trips*)를 봅시다.
- 13 자세한 안내는 Article 22F of the MCAAP agreement, Article 111A of the MCEA Agreement, Article 35C of the SEIU agreement를 봅시다.

- 14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BBB, 윤리/도덕 (*Ethics*)과 MCPS Regulation GCA-RA, 직원의 이해관계 상충 (*Employee Conflict of Interest*)을 봅시다.
- 15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BBB, 윤리/도덕 (*Ethics*)과 MCPS Regulation GCA-RA, 직원의 이해관계 상충 (*Employee Conflict of Interest*)을 봅시다.
- 16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BBB, 윤리/도덕 (*Ethics*)과 MCPS Regulation GCA-RA, 직원의 이해관계 상충 (*Employee Conflict of Interest*)을 봅시다.
- 17 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COE-RA, 무기류 (*Weapons*)를 봅시다.
- 18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ACA, 대인관계(Human Relations)와 ACB,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JHF, 불링/왕따, 희롱 및 협박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및 MCPS Regulation ACA-RA, 대인관계 (*Human Relations*)와 Regulation JHF-RA, 불링/왕따, 희롱 및 협박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봅시다.
- 19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JHC, 아동학대와 아동방치 (*Child Abuse and Neglect*)와 MCPS Regulation JHC-RA, 아동학대와 아동방치의 신고와 조사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를 봅시다.
- 20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ACA, 대인관계 (*Human Relations*)와 ACB,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및 MCPS Regulation ACA-RA, 대인관계 (*Human Relations*) Regulation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봅시다. 추가 정보는 MCPS의 종교의 다양성 존중을 위한 안내 가이드 (*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학생들이 차별, 왕따, 괴롭힘이나 학대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 및 참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내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1 교육위원회 정책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Regulation,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봅시다.
- 22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JHC, 아동학대와 아동방치 (*Child Abuse and Neglect*)와 MCPS Regulation JHC-RA, 아동학대와 아동방치의 신고와 조사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를 봅시다. 이 행동 규범에 있는 부적절한 행위의 예는 특정상황에서의 학대 또는 방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MCPS Regulation JHC-RA에서의 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의 영구적 또는 임시적 보호자, 돌보거나 보호 관리하는 사람이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에게 신체적 상해(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는 정신적 상해를 주어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를 대상으로 영구적 또는 임시적 보호자, 돌보거나 보호 관리하는 성인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괴롭힘과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 강간, 또는 모든 수준의 모욕감을 포함한 모든 성적 착취, 남색, 비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학대 또는 착취에는 아이 또는 성인 취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노출, 관음증, 성적 접근, 키스하기, 쓰다듬거나 어루만지기, 모든 수준의 성범죄, 강간, 남색, 매춘 또는 성매매, 밀매 또는 아동이나 성인 취약자에게

포르노를 보이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법으로 금지된 묘사를 하도록 허락, 장려 및 관련시키는 것과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를 등록된 성범죄자의 곁 또는 같은 공간에 계속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MCPS Regulation JHC-RA에서의 방치는 부모, 후견인이나 보호자, 입양부모,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이웃, MCPS 교직원, 자원 봉사자, 계약 직원, 결정권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돌보거나 보호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다음 상황에서 아동이나 성인 취약자의 보호 관리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를 다음과 같이 방치하거나 적절한 보호 또는 관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보살핌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의 건강이나 안녕을 해하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 아동 또는 성인 취약자의 정신적 상해 또는 정신적 상해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을 경우.

²³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ies JGA, 학생훈육 (*Student Discipline*)과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CPS Regulations JGA-RA, 교실운영과 학생의 행동 중재 (*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JGA-RB, 정학과 퇴학 (*Suspension and Expulsion*),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과 퇴학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JFA-RA, 학생의 권리와 의무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및 MCPS 학생의 행동 규범 (*Code of Conduct*)을 봅시다.

²⁴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JGA-RA:학급 운영과 학생 행동 중재 (*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를 봅시다.

²⁵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ABC,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Parent and Family Involvement*)와 MCPS Regulation ABC-RA,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Parent and Family Involvement*)를 봅시다.

²⁶자세한 안내는 MCPS Regulation ABA-RB, 학교방문자 (*School Visitors*)와 IRB-RA,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Volunteers in Schools*)를 봅시다.

²⁷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ACA, 대인관계 (*Human Relations*)와 ACB,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를 봅시다.

²⁸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Policy ACF, 성희롱 (*Sexual Harassment*)과 ACH, 직장에서의 불링/왕따 (*Workplace Bullying*)와 MCPS Regulations ACF-RA, 성희롱 (*Sexual Harassment*) ACH-RA, 직장에서의 불링/왕따 (*Workplace Bullying*)를 봅시다.

²⁹Section 6-202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에 따라 자격증 소지 직원은 다음 다섯 가지의 다른 이유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정직 또는 해고될 수 있습니다: 부도덕과 음란, 사무실에서의 위법행위 또는 집권남용, 가족법 제5조항, Section 5-704 of the Family Law Article을 어기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복종과 반항, 무능/기술부족, 의도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의 정직 또는 해고의 다섯 가지 법 근거는 그 자체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중, 범죄행위의 유죄판결에 따른 고용과 해고에 관련된 직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되는 기본(모든 관련 있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만을 제공합니다.

³⁰자세한 안내는 COMAR 13A.06.07.07 학교 자동차 운영 (*school vehicle operators*)과 COMAR 13A.06.07.08 학교 자동차 승차 (*school vehicle attendants*)를 봅시다.

³¹ 행동 규범은 어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육구의 단체협상 협약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 근로자 중재법이나 법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중재인을 대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³² 초소판이 다음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staff/respect/

³³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rofessionalgrowth/

³⁴ 교육위원회 정책 전체 개요와 MCPS 규정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policy/

³⁵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핸드북이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transportation/about/jcsbabo.pdf에 준비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와 SEIU의 단체협약의 공동연대를 적용합니다.

³⁶ 최근에 갱신된 양해 각서는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ecurity/

³⁷ Section 6-113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는 MCPS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결정되거나 유죄를 인정 또는 불항쟁답변의 경우, 이를 알고 고용 또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 Criminal Law Article of the Maryland Code §3-307 또는 §3-308에서의 3, 4 도인 **성범죄**와 다른 주법의 위반은 Maryland에서 이루어진 경우, Criminal Law Article §3-307 또는 §3-308로 간주됩니다.

b. **아동 성학대**에 대한 Maryland 주 범죄법조항(Criminal Law Article §3-602)을 위반 및 다른 주법에서의 조항을 Maryland 주에서 위반한 경우. 다른 주의 범죄법을 Maryland 주에서 위반한 경우 Criminal Law Article §3-602 하의 아동 성적 학대로 간주합니다.

c. **폭력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다음을 포함한 Maryland 범죄법조항(Criminal Law Article) §14-101 또는 다른 주의 §14-101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경우 §14-101 of the Criminal Law Article 하의 아동 성적 학대 또는 다른 주법 하의 범죄행위는 §14-101 of the Criminal Law Article하의 아동 성학대 또는 다른 주법하의 범죄행위는 (1) 유괴 (2) 1급 방화 (3) 납치 (4)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은 예외 (5) 신체상해 (6) 불구 (7) 살인 (8) 강간 (9) 강도 (10) 차량탈취 (11) 차량탈취의도 (12) 1급 성범죄 (13) 2급 성범죄 (14) 중죄, 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권총의 사용 (15) 1급 아동학대 (16) 미성년자 성적 학대 (17) 다음에 명시된 범죄에의 가담 또는 가담 시도 (1)-(16)에 명시된 범죄(18) 범죄법(§3-315 of the Criminal Law Article)에서의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19) 1급 공격 (20) 살인을 의도한 공격 (21) 간강을 의도한 공격 (22) 도둑질을 의도한 공격 (23) 1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 (24) 2급 성범죄를 의도한 공격입니다.

³⁸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12.05.02에 따라 Maryland 주 교육감은 만약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Maryland 주 교육위원회가 발급한 교사 또는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1. 유죄인정 또는 불항쟁답변, 판사 앞에서 보호관찰, 유죄, 범죄에 관련하여-
 - a. Criminal Law Article, §§3-601-3-603, Annotated Code of

Maryland와 다른 주의 비슷한 범죄인, 아동학대 또는 방치에 연루된 경우.

b. Criminal Law Article, §14-101, Annotated Code of Maryland의 폭력범죄 또는 다른 주에서의 비슷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2. 유아 성폭행 혐의후의 정직 또는 해고.

추가로 OMAR 13A.12.05.02에는 Maryland State Superintendent of Schools은 자격증 소유자가 여러 가지 다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경우, 정지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범죄에 연관되어 유죄인정 또는 불항쟁답변, 판사 앞에서 보호관찰 유죄를 받은 경우-

a. 청소년 비행범죄에 기여한 경우.

b. 부모덕 행위, 범행이 교사의 교습을 불가능하게 한 이유가 된 경우.

c. 연방법과 주법의 위험한 물질 위반이며, 이 위반이 Maryland에서 이루어질 경우, Code of Maryland에서 명시된 Article 41, §§1-501-1-507과 Criminal Law Article §5-810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고의적으로 또한 알고-

a. 자격증 적용에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은폐할 경우,

b. 자격증 지원 서류에 관해 거짓 보고나 기록을 제출한 경우,

c. COMAR 13A.03.04에서 명시된 시험보안과 데이터 보고 정책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증을 부정 또는 속여서 보유할 경우.

4. 가족법 제§5-701조항, Annotated Code of Maryland을 위반하여 의심되는 아동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 어느 학교에서든 미성년자 학생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에 관련되었거나 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를 불러온 모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해고나 퇴직의 경우.

6. 타주에서 자격증의 정지나 취소를 당했거나 자신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 이 규정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ROCKVILLE, MARYLAND

Office of the Chief Academic Officer 용으로
Department of Materials Management에서 작성
Office of Communications •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Unit 번역
Copyright © 2016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0047.17 • Graphics & Publishing Services 편집 • 8/16 • Korean • NP

